

(사)대한오리엔티어링경기도연맹 통합운영규정

2006. 4. 7 제 정
2006. 12. 3 1차 개정
2007. 12. 2 2차 개정
2008. 12. 7 3차 개정
2010. 1. 24 4차 개정
2011. 1. 23 5차 개정
2012. 3. 17 6차 개정
2013. 2. 28 7차 개정
2014. 3. 9 8차 개정
2015. 3. 8 9차 개정
2017. 3. 25 10차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오리엔티어링경기도연맹(이하 “본 연맹”이라 한다)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본 연맹의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(이하 “중앙연맹”이라 한다) 또는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2 장 명칭사용

제4조(명칭사용) ① 본 연맹의 명칭은 정식명칭과 약식명칭으로 구분한다.

② 공식문서, 공식행사, 유관단체,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공식 업무에 관련해서는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한다.

제5조(공식명칭) ① 본 연맹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경기도연맹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Gyeonggido Orienteering Federation in Korea라 한다.

② 시군연맹의 정식명칭은 대한오리엔티어링○○시.군연맹으로 하고 영문으로는 ○ Branch of Korea Orienteering Federation in Gyeonggido로 한다.

제6조(약식명칭) ① 본 연맹의 약식명칭은 경기도오리엔티어링연맹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yeonggido Orienteering Federation으로 한다.

② 시군연맹의 약식명칭은 ○○시군오리엔티어링연맹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○○

Orienteering Federation으로 한다.

제 3 장 대의원총회

제7조(총회 운영) 본 연맹의 대의원 총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이사회

제8조(이사회 운영) 본 연맹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이사의 직무) 본 연맹의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.

1. 전무이사: 사무국을 관리 감독하고 연맹의 행정 및 대회 업무를 총괄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을 처리
2. Foot-O 이사: Foot-O 대회의 기획, 운영 관련 감독 및 선수선발 관리, 경기력 향상 및 경기기술 자료의 연구 보고
3. MTB-O 이사: MTB-O 대회의 기획, 운영 관련 감독 및 선수선발 관리, 경기력 향상 및 경기기술 자료의 연구 보고
4. Ski-O 이사: Ski-O 대회의 기획, 운영 관련 감독 및 선수선발 관리, 경기력 향상 및 경기기술 자료의 연구 보고
5. Trail-O 이사: Trail-O 대회의 기획, 운영 관련 감독 및 선수선발 관리, 경기력 향상 및 경기기술 자료의 연구 보고
6. 교육이사: 오리엔티어링 지도자 양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,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교재개발
7. 지도이사: 지도제작 관련 정보교류 및 자료의 연구 보고, 지도제작자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
8. 홍보이사: 오리엔티어링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, 출판물 발간, 대외 협력 및 교류 등
9. 해외이사: 오리엔티어링 관련 해외 동향 및 대회 관련정보 수집과 제공, 국제대회 파견 등
10. 심판이사: 대회별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경기규칙 및 심판기술 연구 등
11. IT장비이사: 대회 기록계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, 관련 장비의 도입 및 유지관리 등
12. 청소년이사: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청소년 선수육성, 청소년기관과의 연계협력 등
13. 환경이사: 환경보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인식개선 활동, 대회 및 행사의 환경보

호 대책수립과 관리 등

14. 의무이사: 의료 및 도핑방지를 위한 활동 및 교육, 홍보 등

15. 학술이사: 오리엔티어링의 학술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업무

16. 안전이사: 오리엔티어링의 안전사항 점검 및 대책 수립, 안전교육 실시 등의 업무

17. 사무국장: 사무관리 및 회계업무 총괄, 각종 사업의 행정지원 총괄, 총회 및 이사회 담당 등

제 5 장 사무국

제10조(사무국의 기능) 사무국은 본 연맹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

2. 오리엔티어링 관련정보 제공

3. 초보자, 중상급자 교실 운영

4. 오리엔티어링 위탁행사 운영

5. 전국 공인대회, 통합대회 개최

6. 3급 지도자과정, 보수교육 운영

7. 주제별 전문과정 운영 및 지원

8. 대표선수 육성 및 활동 지원

9. 시군연맹 및 클럽활동 지원

10. 대회 및 교육용 지도제작

11.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12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사무관리) 사무국의 업무처리는 대한체육회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
제 6 장 시군연맹

제12조(시군연맹의 구성) ① 시군연맹은 해당 시군을 거점으로 하는 1개 이상의 클럽 및 15명 이상의 회원을 두어야 한다.

② 시군연맹의 창립을 결의하는 총회를 거쳐야 한다.

제13조(가입 및 등록) ①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시군연맹은 등록신청서, 조직구성표, 회칙, 회원명부,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본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군연맹의 등록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4조(클럽운영) ① 시군연맹의 회원은 누구나 5명 이상의 회원을 둔 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클럽 명칭은 기존 클럽과의 혼선을 피해야 하며 시군연맹 소속으로 등록해야 한다.

③ 시군연맹 회장은 소속 클럽을 본 연맹에 등록해야 한다.

④ 본 연맹은 클럽이 주최하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 7 장 교육 및 행사

제15조(3급 지도자과정) ① 오리엔티어링 지도자 양성을 위해 풋 오리엔티어링(Foot Orienteering) 3급 지도자과정 및 종목별 3급 지도자과정을 운영한다.

② 과정내용 및 세부운영은 중앙연맹의 운영기준을 따른다.

③ 과정 참가자로부터 지도자등록비를 포함한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④ 개별참가자를 위한 정규과정, 단체참가자를 위한 특별과정으로 운영한다.

⑤ 정규과정은 연 1회 이상 개설한다.

⑥ 특별과정은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설하며 10명 이상 참가시 개설할 수 있다. 타 시도연맹의 관할지역은 해당 연맹의 동의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.

⑦ 중앙연맹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.

⑧ 교육운영은 교육이사의 협조 하에 사무국에서 주관하며 과목별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.

제16조(초보자교실) ① 오리엔티어링의 보급 및 저변확대를 위해 초보자교실을 운영한다.

② 오리엔티어링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보자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과목을 편성한다.

③ 교육운영은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실기교육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④ 인근 시도연맹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분야별 전문과정) ① 오리엔티어링 지도자 및 동호인을 위한 분야별 전문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문과정의 내용은 오리엔티어링 기술, 지도제작, 코스설정 등 임원 및 회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개설, 운영한다.

③ 교육운영은 사무국장의 협조 하에 담당이사가 주관하며 과목별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.

④ 과정 참가자로부터 교재비를 포함한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⑤ 인근 시도연맹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다.

- 제18조(위탁 교육 및 행사) ① 본 연맹은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오리엔티어링 관련 교육 및 행사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탁 교육 및 행사는 유료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행사의 접수 및 운영은 사무국에서 담당한다.
- ③ 시군연맹을 통해 의뢰한 위탁행사의 경우 해당 시군연맹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(장비 대여) 본 연맹 보유 장비를 외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대여요청이 있는 경우 본 연맹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줄 수 있다.

제 8 장 대회 및 경기

제20조(대회 및 경기) 본 연맹은 전국규모의 공식대회 및 통합대회를 운영한다.

- 제21조(전국규모 공식대회) ① 본 연맹은 오리엔티어링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 및 대회운영 경험축적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전국규모 공식대회를 운영해야 한다.
- ② 풋 오리엔티어링(Foot Orienteering) 대회 및 종목별 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③ 대회의 개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④ 사무국은 대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진에게 공개해야 한다.
- ⑤ 대회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앙연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22조(통합 대회) ① 본 연맹은 오리엔티어링의 보급 및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개월마다 통합 대회를 운영한다.
- ② 풋 오리엔티어링(Foot Orienteering) 대회를 기본종목으로 하여 응용방식의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인근 시도연맹과의 협의에 따라 대회명칭 및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④ 경기운영은 사무국 또는 시군연맹이 담당하며 시군연맹이 운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제23조(대회 운영예산) ① 대회 및 경기 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시군연맹 또는 클럽이 전국규모의 대회를 주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, 예산,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제24조(대회감독관 및 심판) ① 대회 및 경기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회감독관 및 심판 제도를 운영한다.
- ② 대회감독관 및 심판 제도의 세부운영은 중앙연맹의 운영기준을 따른다.

제 9 장 강 사

- 제25조(강사 위촉) ① 본 연맹의 교육 및 행사 운영을 담당할 강사는 임원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다.
- ② 이론교육은 2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강의경력 및 능력을 갖춘 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.
- ③ 실기교육은 3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실전경험과 경기성적이 우수한 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.
- ④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원이 아니더라도 위촉할 수 있다.

- 제26조(강사의 종류) ① 본 연맹의 강사는 역할에 따라 일반강사, 진행강사, 특별강사, 초빙강사로 구분한다.
- ② 일반강사는 각종 교육 및 행사에서의 이론 및 실기를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.
- ③ 진행강사는 3급 지도자과정의 진행 및 시험감독, 분야별 전문과정의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.
- ④ 특별강사는 다수인 대상 위탁행사에서의 주진행(MC)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.
- ⑤ 초빙강사는 본 연맹 소속이 아닌 외부강사를 말한다.

- 제27조(강사의 권리와 의무) ① 교육 및 행사를 담당한 강사에게는 소정의 강사비, 여비를 지급한다.
- ② 강사의 역량개발을 위해 강사협의회, 강사워크숍, 강사평가회, 설문을 통한 강의평가 등을 실시하며 강의수준이 미흡한 경우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.
- ③ 교육 및 행사에 배치된 강사는 담당 업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, 강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④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육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사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.

제 10 장 대표선수

- 제28조(대표선수) ① 본 연맹은 전국단위 공인대회에 출전할 경기도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운영한다.
- ② 대표선수는 25세 이상의 일반대표와 13세부터 24세까지의 주니어대표로 구분한다.
- 제29조(대표선발) ① 선발 대상 및 인원, 선발기준, 방법 등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전 개시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.
- ② 선발전 참가자격은 임원 및 시군연맹 소속 회원으로 중앙연맹 선수등록 규정에

의해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.

③ 선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1, 2)

④ 선발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며 최종선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제30조(대표선수의 징계) ①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표 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선수에게는 그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.

② 대표선수의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1조(대표선수 지원) ① 본 연맹의 대표선수에게는 본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, 교육 등에 대한 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타 시도연맹 주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한다.

③ 전국 공인대회 등 대표선수의 대회참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대표선수용 단체복, 경기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 11 장 지도제작

제32조(지도제작 기준) 본 연맹의 지도제작 기준은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 및 중앙연맹의 지도제작 규정에 따른다.

제33조(지도제작의 종류) 본 연맹 주최 대회 및 교육을 위한 자체제작과 외부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위탁제작으로 구분한다.

제34조(지도제작자 양성) 지도제작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35조(저작권) ① 본 연맹의 예산으로 제작된 지도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맹에 귀속되며 제작에 참여한 자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② 위탁 제작한 지도는 위탁 기관 및 단체에 귀속된다.

제36조(지도의 제공) ① 본 연맹의 예산으로 제작된 지도는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가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.

② 지도 제공 시에는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인쇄된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2 장 예산 및 회계

제37조(예산관리 기준) 본 연맹의 예산관리 기준은 대한체육회의 예산관리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8조(회계처리 기준) ① 본 연맹의 회계처리 기준은 대한체육회의 회계규정 및 중앙연맹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수입 및 지출내역은 월 단위로 집계하여 임원진에게 공개한다.

제39조(회비) 본 연맹의 임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3)

제40조(사무국장 등 인건비) 사무국장 등의 직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예산에 반영한다.

제41조(참가비) ① 본 연맹이 주최하는 교육, 행사, 대회 등에 다음의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4)

1. 교육참가비: 본 연맹이 주최하는 교육과정 참가비

2. 행사참가비: 외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 및 행사참가비

3. 대회참가비: 본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및 경기 참가비

② 위탁행사의 경우 행사의뢰 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해당 강사에게 강사비를 직접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.

③ 본 연맹의 임원 및 시군연맹 소속회원에게는 필요에 따라 교육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④ 본 연맹의 대표선수에게는 대회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42조(여비) 본연맹의 임원 및 회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5)

제43조(강사비) ① 본 연맹의 교육 및 행사에 소요되는 강사비는 공식일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6)

② 원거리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행사의 경우 여비지급기준에 의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44조(지도제작비) ① 본 연맹의 대회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도제작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7)

② 외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지도제작 경비의 수입 및 지출 기준, 지도 감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8)

제45조(경기운영수당) 통합대회 운영자에 대해 운영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별표-9)

제46조(지도판매비) 본 연맹 소유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10)

제47조(장비사용료) 본 연맹의 보유장비를 외부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11)

제48조(최우수선수 지원금) 본 연맹의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어 지급하는 외국대회 참가 지원금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12)

제49조(신규클럽 지원금) 본 연맹의 신규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13)

제50조(경조사비) 본 연맹 및 중앙연맹의 임원, 시군연맹의 회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14)

제 13 장 포상

제51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대회포상, 최우수선수 포상, 감사장 등으로 구분한다.

제52조(대회 포상) ① 본 연맹이 주최한 공식대회의 클래스별 상위기록 선수에게 포상하며 그 기록을 유지한다.

② 포상대상자 선정은 클래스별 상위기록 선수로 한다.

③ 시상은 상장 이외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53조(최우수선수 포상) ① 본 연맹의 임원 및 시군연맹의 소속회원으로 대표선수 선발전 등 종합적인 경기성적이 우수한 남녀 선수 각 1명에게 포상한다.

② 포상대상자 선정은 사무국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,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별표-15)

③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자는 4년차부터 다시 선정될 수 있다.

④ 시상은 표창장 이외에 부상으로 외국대회 참가 지원금을 지급한다.

⑤ 외국대회 참가 지원금은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으며 선정공고 후 2년간 유효하고 대회참가 후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54조(감사장) 본 연맹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다.

<별표-1>

대표선수 선발기준

구 분	선 발 기 준	비 고
선발인원	일반부 남·녀 각 5명 이내(최대 10명)	
선발전 기간	매년 2. 1~12. 31(11개월간)	
선발전 대회	시·도연맹 주관 국내대회(공인대회, 통합대회 등)	
선발방법	- 클래스 적용: 엘리트 - 참가횟수: 4회 이상 득점자에 한함.(4회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) - 점수계산: 클래스별 1위 시간기록(초)/해당선수의 시간기록(초)×1,000, 공인대회는 1.5배 - 선정방법: 공인대회 및 통합대회 상위점수 각 2개 기록의 합산 순으로 선정 - 동점일 경우 저연령자 우선	

별표-2>

주니어대표 선발기준

구 분	선 발 기 준	비 고
선발인원	중등부, 고등부, 대학부 15명 이내	
선발전 기간	매년 2. 1~12. 31(11개월간)	
선발전 대회	시·도연맹 주관 국내대회(공인대회, 통합대회 등)	
선발방법	- 1순위: 전국 공인대회 2회 이상 입상자 - 2순위: 전국 공인대회 및 통합대회 각 1회 이상 입상자 - 3순위: 통합대회 5회 이상 입상자 ※ 정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 선발	

<별표-3>

임원 회비

대 상	회 장	부회장	이 사
금 액	50만원/년	20만원/년	10만원/년

<별표-4>

교육, 행사, 대회 등의 참가비

항 목		적 용 기 준	금 액
교육참가비	초보자교실	10명 미만의 개인	무료
	중상급자교실	20명 미만의 개인	20,000원/인
	3급 지도자과정	정규과정	150,000원/인 (교재비, 자격증발급비 별도)
		특별과정	120,000원/인 (자격증발급비 별도)
	보수교육	3급지도자 보수교육	70,000원/인 (교재비 포함, 자격증발급비 별도)
행사참가비	분야별 전문과정	시간, 장소, 내용 등에 따라 별도 적용	10,000원/인 이상
	청소년	초, 중, 고, 대학생 행사	10,000원/인
	성인	성인단체 행사	15,000원/인
	가족	가족 행사	20,000원/가족
	기타 위탁행사	시간, 장소, 내용 등에 따라 별도 적용	-
대회참가비	통합대회	청소년(초,중,고)	5,000원 이상/인
		대학생, 성인, 가족	7,000원 이상/인(팀)
		엘리트선수	10,000원 이상/인
	공식대회	청소년(초,중,고)	5,000원 이상/인
		대학생, 가족	10,000원 이상/인
		성인, 엘리트선수	15,000원 이상/인

<별표-5>

국내여비 지급기준

항 목		금 액	산출기준
관내여비	일 비	10,000원	4시간 미만
		20,000원	4시간 이상
관외여비	교통비	자가차량 이용시: 200원/km 대중교통 이용시: 실비계산	차량소유자만 지급(동승자는 제외) 시외/고속 버스, 무궁화호 기준
	식 비	7,000원	1식 기준
		20,000원	1일 3식 기준
	숙박비	50,000원	1박 2인 기준
		30,000원	1박 1인 기준
	일 비	20,000원	1일 기준

※ 관내: 편도 12km 이내 또는 전철이용 가능 지역, 관외: 편도 12km 이상의 전철이용 불가능 지역

<별표-6>

강사비 지급기준

항 목	적 용 기 준	금 액
일반강사 (각종 교육 및 행사)	최초 1시간	50,000원
	추가 1시간마다	이론 30,000원 실기 20,000원
진행강사 (3급 지도자과정 교육진행, 시험감독 등)	4시간까지	50,000원
	추가 1시간마다	10,000원/시간
특별강사 (다수인 대상 행사의 MC)	최초 1시간	60,000원
	추가 1시간마다	40,000원
초빙강사		별도 적용

※ 1인 1일 지급한도액: 200,000원, 관외 교육 및 행사시 여비 별도지급

<별표-7>

지도 자체제작비 지급기준

항 목	적 용 기 준	금 액
현지조사비	시가지, 경작지	4,000원/ha
	공원지역	5,000원/ha
	식생지역	6,000원/ha
교 통 비	제작자의 거주지로부터 조사지역까지의 왕복거리×조사일수(5ha=1일)	200원/km
식 비	조사일수(5ha=1일)	10,000원/일

<별표-8>

지도 위탁제작비 산출기준

항 목		적 용 기 준	금 액
수 입	기본경비	제도비, 코스설정비, 인쇄비	700,000원
	현지조사비	조사지역의 면적 (다음지도 면적계산 기준 10,000㎡=1ha)	<u>50,000원/ha</u>
	출장여비	교통비+식비+일비 (교통비: 200원/km×조사일수, 일비: 20,000원/일, 식비: 20,000원/일, 조사면적 5ha=1일)	출장여비×조사일수
지 출	기본경비	제도비, 코스설정비, 인쇄비	600,000원
	현지조사비	조사지역의 면적 (다음지도 면적계산 기준 10,000㎡=1ha)	<u>40,000원/ha</u>
	출장여비	교통비+식비+일비 (교통비: 200원/km×조사일수, 일비: 20,000원/일, 식비: 20,000원/일, 조사면적 5ha=1일)	출장여비×조사일수

※ 최소 위탁금액은 1,500,000원으로 함.

<별표-9>

경기운영수당 지급기준

항 목	금 액	적 용 기 준
<u>경기운영수당</u>	<u>50,000원/일</u>	1. 교통비 별도 지급 2. 사무국은 여비만 지급

<별표-10>

용품판매비 산출기준

항 목	금 액	적 용 기 준
컨트롤 카드	<u>10,000원/100매</u>	<u>시도연맹·동호인클럽</u>
	<u>20,000원/100매</u>	<u>일반단체</u>
배 번	<u>1,000원/매</u>	
오리엔티어링지도	<u>1,500원/매</u>	<u>A4 기준/인쇄</u>

※ 시군연맹 및 클럽 주최 교육 및 행사는 사용료 면제

<별표-11>

장비사용료 산출기준

항 목	금 액	비 고
출발신호기	<u>10,000원</u>	
컨트롤마크(펀치 포함)	<u>3,000원/세트</u>	
나 침 반	<u>1,000원/개</u>	<u>(시도연맹, 동호인클럽)</u>
	<u>2,000원/개</u>	<u>(일반단체, 위탁행사)</u>
전자계측시스템	<u>200,000원/식</u>	<u>위탁행사, 시도연맹·동호인클럽</u>
	<u>300,000원/식</u>	<u>일반단체 단순 대여시</u>
S.I카드	<u>2,000원/개</u>	<u>통합대회, 시도연맹·동호인클럽</u>
	<u>3,000원/개</u>	<u>공인대회, 위탁행사</u>
	<u>4,000원/개</u>	<u>일반단체 단순 대여시</u>

※ 시군연맹 및 클럽 주최 교육 및 행사는 사용료 면제

※ 손망실 시에는 현물배상 또는 시중가 현금배상(보증금 별도)

<별표-12>

최우수선수 지원금

항 목	금 액	비 고
외국대회 참가지원(지역제한 없음)	500,000원/인	

<별표-13>

신규클럽 지원금

항 목	금 액	비 고
신규클럽 등록시 지급	100,000원	최초등록 1회에 한함.

<별표-14>

경조사비 지급기준

항 목	금 액	비 고
본 연맹 임원의 회갑, 결혼	200,000원	공식 자료제출, 통보 기준
본 연맹 임원 부모의 사망	200,000원	
본 연맹 임원의 1주일 이상 입원	100,000원	
본연맹 임원의 기타 경조사	100,000원 이내	
시군연맹 소속 회원의 경조사	50,000원	
시도연맹 회장 포함 중앙연맹 임원의 경조사	100,000원 이내	
기타 특별한 사항	회장, 사무국장이 결정	

<별표-15>

최우수선수 선정기준

구 분	금 액	비 고
①참가점수	참가점수: 당해년도 경기참가 횟수 (운영 포함, 국내경기에 한함)	
②기록점수	상위 5개 기록 합산(대표선발전과 동일방식, 1위부터 10점, 1점 단위로 배분)	
③입상점수	공인대회 입상(1위 3점, 2위 2점, 3위 1점), 입상 건수마다 합산	
④최종점수	①~③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최우수 선수로 선정, 동점일 경우 저연령자 우선	